

2025년도

EPR 제도 안내

CONTENTS

- I.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소개
- II.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 III.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 IV. 2024년도 출고·수입 실적서 작성 방법
- V. 출고·수입 실적 조사 안내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소개

E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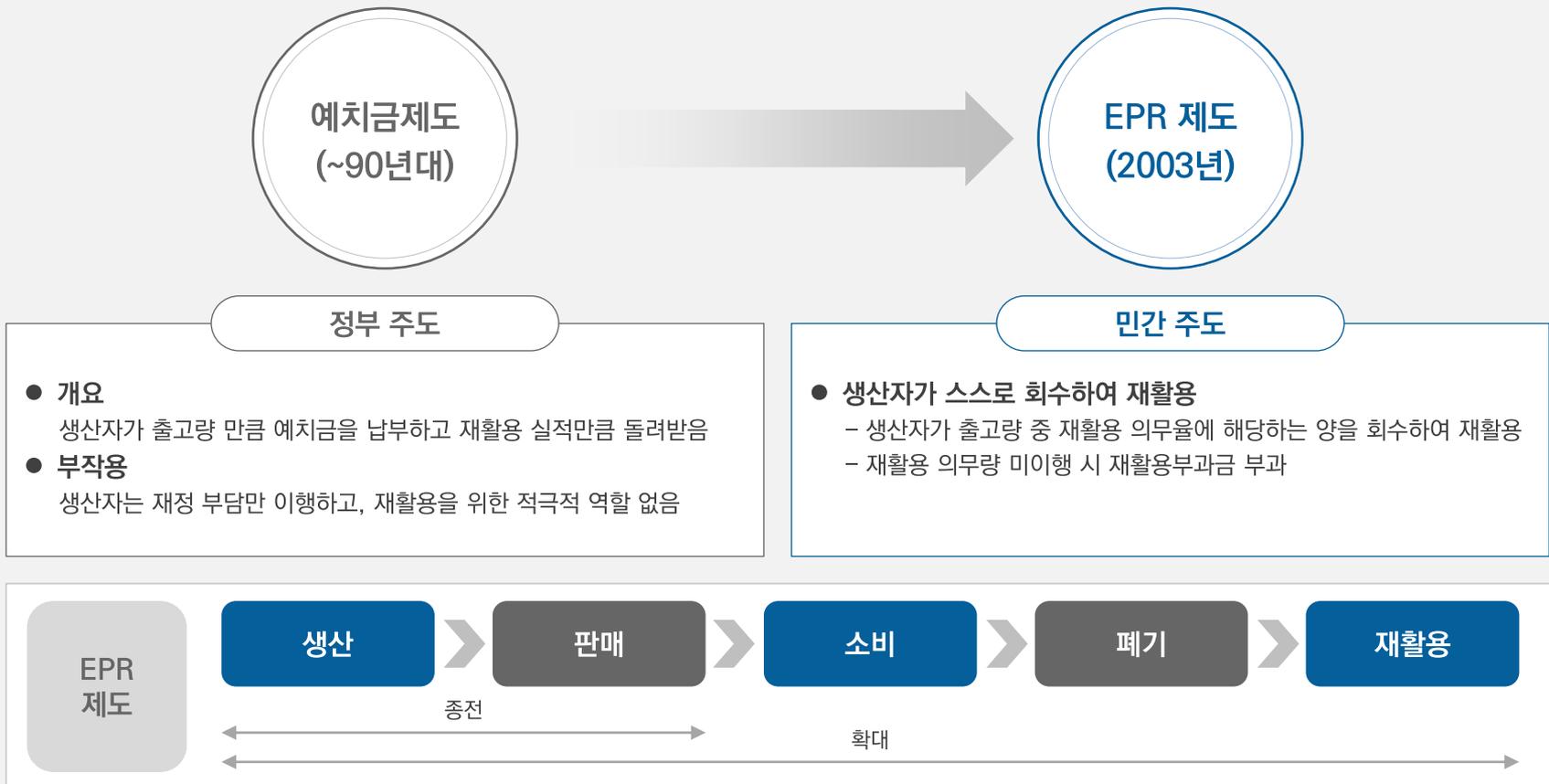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확장된 생산자의 책임, 의무 ”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제도 수행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등

EPR 제도 도입배경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항

개정 전문

생산 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2항

개정 전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입증 방법

- 제출서류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9호의2서식]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 첨부서류 : ①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EPR제도 주체별 역할

소비자

- 제품 및 포장재의 사용 후 분리배출 철저

의무 생산자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법령 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 보고서 접수 및 실적 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
- EPR제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공제조합

-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의거 환경부 인가 받은 법인
- 의무생산자 재활용 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지방자치단체

- EPR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 제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I.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포장재의 정의 [관련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2조(정의) 제14호]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재활용의무 대상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포장재의 종류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발포합성수지(EPS) 스티로폼
 - 단일복합재질(PVC)
 - PET병(무색, 유색, 복합재질)
 -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기타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필름·시트형 및 복합재질)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 용기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제품 및 필름류 5종

- 전지류
- 타이어
- 윤활유
- 조명
 - 형광등
 - 발광다이오드(LED)조명
- 양식용 부자
- 곤포사일리지
- 김발장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15종)
 - 산업용 필름
 - 안전망
 - 로프
 - 폴리염화비닐(PVC)제품
 - 파렛트(pallet)
 - 창틀·문틀
 - 건축용 단열재
 -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합성수지재질 필름류(PVC제외)
 - 에어캡
 - 세탁소 비닐
 - 플라스틱 봉지봉투
 - 1회용 비닐장갑
 - 식품포장용 랩
 - 교체용 정수기 필터
 - 어망
 - 폴리에틸렌 관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플라스틱 운반상자
 - 바닥재
 - 전력·통신선

폐기물부담금 VS 자발적 협약제도 VS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대상 : 제품 자체

- 살충제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 유독물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 부동액
- 껌
- 1회용 기저귀
- 담배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중 14업종)

'23년 EPR 전환대상 품목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자발적협약제도

'22년 EPR 전환대상 품목

-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3년 EPR 전환대상 품목

-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폐기물부담금 환원 품목

- 영농PE필름, 인조잔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 포장재 + 제품 자체(일부 품목)

- 음료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전기기기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전체
- 필름류 제품 5종
-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22년 신규품목)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 ('23년 신규품목)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4대 포장재)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유리병	금속캔	PET	EPS	PSP	PVC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PE,PP,PS	필름시트형 및 복합재질
합성수지류								

유리병		금속캔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뚜껑테 일체형 병뚜껑에 아예 뚜껑테가 없거나, 개봉 후 뚜껑테가 유리병에 남지 않는 경우		뚜껑 일체형 뚜껑이 몸체와 일체를 이루거나, 뚜껑을 반복해서 여닫으며 사용하도록 한 경우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뚜껑테 분리형 개봉 후 뚜껑테가 병목에 남아 있는 경우		뚜껑 분리형 뚜껑 부에 손잡이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오픈 시 금속 뚜껑과 몸체가 분리되어 통상적으로 반복사용하기 어려운 형태		내용물이 물인 아이스팩의 필름 포장재

제품



전지류(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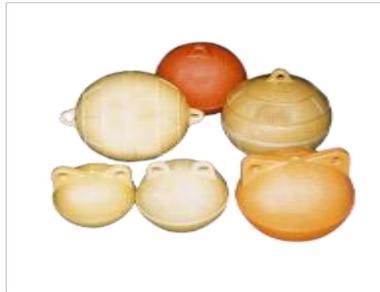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1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타이어(kg)



윤활유(리터)



양식용부자(kg)



곤포사일리지(kg)



김발장(kg)

조명 제품(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조명)



형광등(개)



발광다이오드(LED)조명-전구형(kg)

※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중 평판형은 제외(시행령 개정 중)



발광다이오드(LED)조명-직관형(kg)

제품(일회용 봉투)



무지 일회용
비닐봉투(상표 x)



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비닐봉투



유통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롤백



택배용 봉투

제품(필름류 제품 5종)



에어캡(제품)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비닐 장갑



식품포장 랩



지퍼백



우산 비닐



다회용 쇼핑백



다회용 쇼핑봉투



플라스틱 봉투

II.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제품(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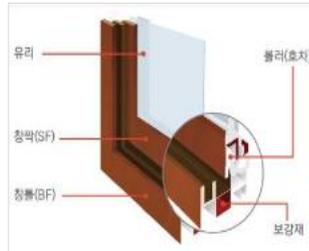
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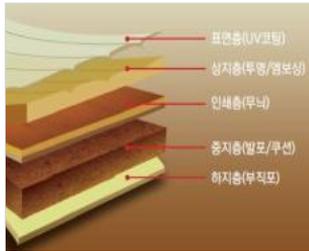
안전망



어망



창틀·문틀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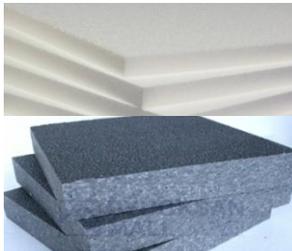
팔레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폴리에틸렌관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법률 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도입 ('19.12.25~)

관련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고 결과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



주요 내용

재질 구조 평가

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재질 구조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포장재의 겉면에 표시

- (평가품목)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4대 포장재
- (평가등급)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등급
- (등급표시)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활용 어려움” 등급 의무 표시**

* “재활용 보통” 이상 등급의 표시는 선택사항

미 이행 시 조치사항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포장재의 겉면에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법률 제41조제2항 제2호 내지 제2의3호 까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RECYCLE
WAST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III. 재활용의무 이행 방법

EPR 제도 절차



이행에 관한 법 조항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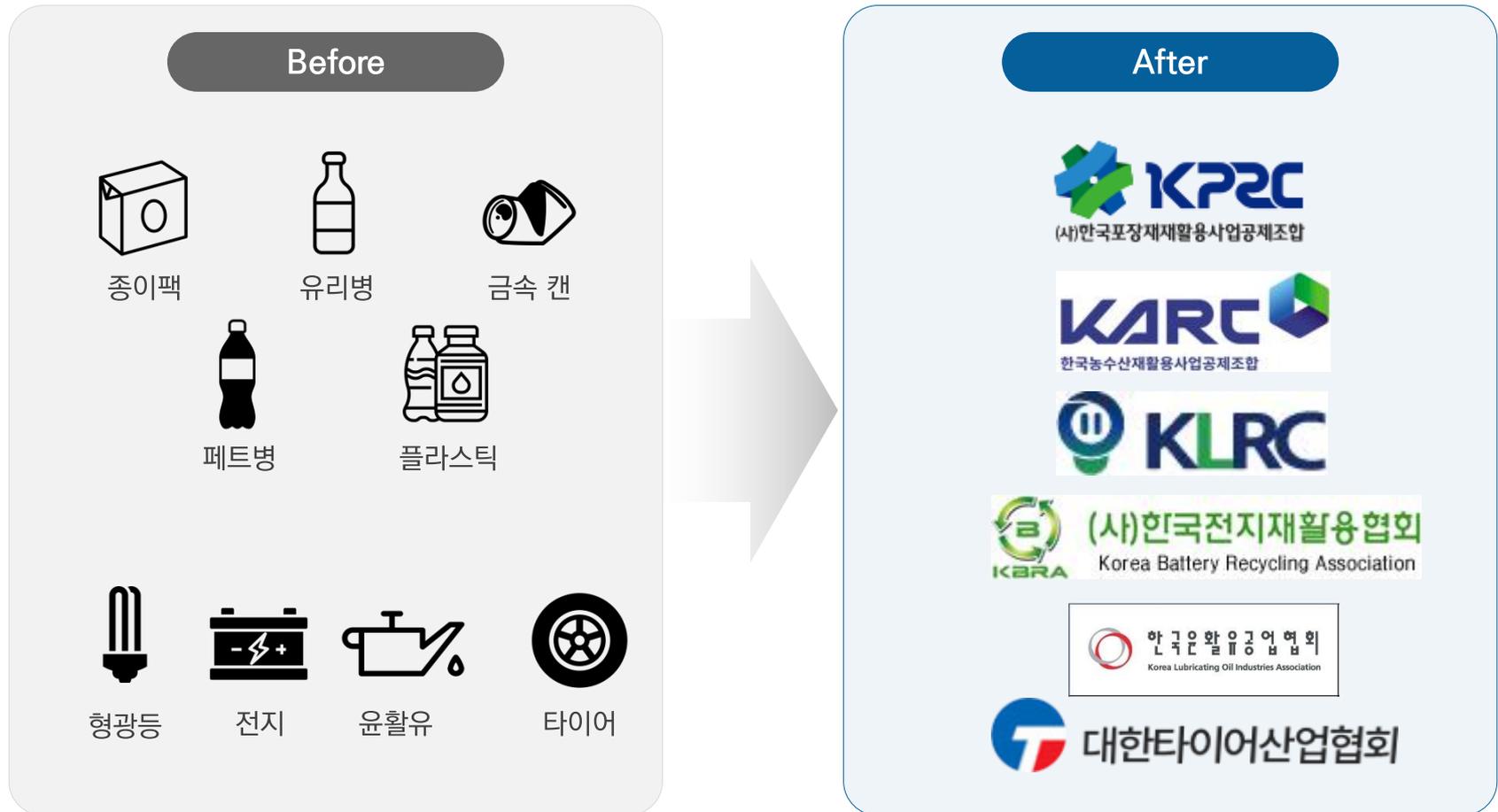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EPR제도 공제조합 현황



EPR제도 공제조합 현황

대상 품목	공제조합명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필름류 제품5종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윤활유, 윤활유 용기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전지류	(사)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타이어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수산물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 비료사료포장재, PP마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창틀·문틀, 바닥재,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사)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생활용품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자동차유지관리용품	(사)한국자동차자원순환공제조합
안전망, 어망, 로프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폴리에틸렌(PE)관	(사)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건축용단열재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력·통신선	(사)한국전선재활용공제조합



이행 주체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행 기간

재활용의무이행 당해 연도 (1. 1. ~ 12. 31.)

- 의무이행연도 중 신규 계약한 경우에는,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일부터 인정

※ 월 단위로 인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인정

※ 이 때 제출일은 공단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적용

이행 방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



재활용 의무율

-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 고시 및 연도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 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시행령 별표5)

재활용 의무량

산출 계산식

재활용
의무량

=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x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재활용의무율

품목			재활용의무율		
			'24	'25	
금속캔	철 캔		0.854	0.872	
	알루미늄캔		0.807	0.813	
유리병			0.728	0.758	
종이팩	일반팩		0.293	0.293	
	멸균팩		0.146	0.146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PET병)	단일	무색	0.768	0.789
			유색	0.728	0.807
		복합 재질		0.894	0.900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71	0.871
	단일 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0.532	0.527
	단일·복합 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0.408	0.434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 재질		0.893	0.895
		복합 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 재질		0.860	0.900
	유탄유용기			0.826	0.840
	1회용 비닐 장갑			0.860	0.900

재활용의무율

품목		재활용의무율		
		'24	'25	
수산물 양식용 부자		0.129	0.115	
윤활유		0.765	0.769	
타이어		0.800	0.800	
조명 제품	형광등	0.969	0.969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구형	0.120	0.134
		직관형	0.120	0.125
전지류	수은 전지	0.600	0.600	
	산화은전지	0.462	0.458	
	리튬전지	0.463	0.463	
	니켈·카드뮴전지	0.486	0.486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338	0.348	
	니켈수소전지	0.169	0.169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0.604	0.645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0.807	0.810	

재활용의무율

품목	재활용의무율	
	'24	'25
산업용 필름	0.636	0.652
교체용 정수기 필터	0.799	0.801
안전망	0.383	0.400
어망	0.410	0.420
로프	0.231	0.238
폴리에틸렌 관	0.102	0.105
폴리염화비닐 제품	0.101	0.102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0.518	0.549
파렛트	0.146	0.156
플라스틱 운반상자	0.205	0.207
창틀·문틀	0.154	0.160
바닥재	0.225	0.220
건축용 단열재	0.097	0.097
전력·통신선	0.175	0.188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502	0.517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 대상 및 기간

-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보증금대상사업자 (법 제18조제1항)
 -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이외의 대상은 제출 대상이 아님

- 제출기간 (당해 연도 1. 1. ~ 1. 31.)
 - 관련 근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출 서식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규칙 제15조 제1항)

구분	분담금 공제 의무생산자	유통지원센터 구성원이 아닌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구성원인 공제조합
제출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

첨부 서류

- 환경부 예규 제 713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예규’) 제5조제1항 제1호~제5호, 제5조 제3항, 제57조제1항

구분	첨부 서류	비고
1	▶ 회수·재활용 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	
2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	
3	▶ 회수·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 등 법 제16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4	▶ 유통지원센터와의 대행약정서	유통지원센터 구성원인 공제조합만 제출
5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분담금 납부내역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의무생산자만 제출
6	▶ 예규 제5조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세부내역 (수탁자 내역)	공제조합만 제출
7	▶ 회수·재활용수탁자 실태조사 결과	유통지원센터 구성원인 공제조합만 제출 (※ 실시 : 유통지원센터)

별지 제10호 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1.22>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①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② 재활용 의무율	③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직접		위탁		회수 및 재활용 계획			
			④ 수탁자 및 소재지	⑤ 방법	⑥ 수탁자 및 소재지	⑦ 방법 및 기준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⑧ 회수·재활용 실적의 확인 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의2 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3.11.22>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② 재활용의무율	회수 및 재활용 계획				
			회수(인계자)	재활용(인수자)			
			③ 회수의무 대행자	④ 수탁자 및 소재지	⑤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분기별 회수·재활용 실적 제출 (유통지원센터 참여 공제조합)

분기별 회수·재활용 실적 제출

-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공제조합은 제1호, 제2호 첨부서류를 각호에 따라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공단 전산시스템 입력방식으로 제출 할 수 있음(예규 제10조 제2항)
※ 기 제출 자료는 다음연도 4월말에 제출할 필요 없음

구분	첨부 서류	세부 증빙 자료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별표6)에 따른 제품·포장재 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방법에 관한 서류(회수 재활용 계량 증명서, 거래·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계량증명서의 경우 공단이 정하는 사항을 유통지원 시스템을 통해 공단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 자료로 같음 • 매입매출원장은 익년 4월말까지 제출 가능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전산시스템을 통해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산 자료로 대체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및 제출 기한

-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30일까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영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 1. 19.〉

제출 서식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첨부 서류

- 예규 제 10조 제1항 각 호

구분	첨부 서류	세부 증빙 자료
1호	▶ 규칙 (별표6)에 따른 제품·포장재 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준수 방법에 관한 서류	▶ 회수재활용 계량증명서 ▶ 거래·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
2호	▶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는 자의 사본
3호	▶ 회수·재활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실적 증명서류	▶ 회수·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지급 내역
4호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초과 재활용실적을 해당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통보서
5호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규칙 별지 제13호의3 서식)	▶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료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6호	▶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내역	▶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벌칙 조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41조 제2항)
 -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41조 제3항)
 -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Ⅳ. '24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방법

제출대상 및 제출기한

제출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법 제16조 6항, 규칙 제14조)

-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출고 실적은 의무 생산자가 직접 제출 (→ 공단)
- 비대상사업자 → 비대상 사유서 제출
-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인 경우 '재활용 면제대상 확인서' 제출(법 제16조제2항, 규칙 제13조)
- 일부 품목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대상 품목을 포함하여 출고·수입실적서(제9호의3서식)만 제출

제출 기한 | 매년 의무이행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제출 서류

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경 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예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지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공단 지침)

구분	제출 자료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첨부서류 (필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업자는 수입량 증명서류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및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2.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첨부서류 (선택)	4.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5.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자료 및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6.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에 한함, 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규칙 별지 제13호의3 서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의 경우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작성 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제출대상

- 제출 대상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법 제16조제2항, 규칙 제13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시행령 별표4)
- 일부 품목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대상 품목을 포함하여 출고·수입실적서(제9호의3서식)만 제출
-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자료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벌칙 조항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9조 [별표4]

구분	업종	면제 규모 (전년도 기준)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R대상 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및 판매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b. 연간 포장재 출고량: 4톤 미만 ※ 단, 유리병: 10톤, 발포: 0.8톤 미만 수입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b. 연간 포장재 수입량 : 1톤 미만 ※ 단, 유리병: 3톤, 발포: 0.3톤 미만
필름류 제품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름류 제품5종 제조업 및 수입업자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R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필름류 제품5종 제외) 	면제 기준 없음(제조·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신규)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3년 신규)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 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및 판매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b. 연간 제품 출고량: 10톤 미만 수입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b. 연간 제품 수입량 : 3톤 미만 <p>※ '22~'23년 신규 품목의 면제 규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외</p>

※ 연간 매출액 : 의무 대상 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법인 총 매출액)

※ 연간 수입액 : 의무 대상 업체의 연간 총 수입금액 (C.I.F가격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 포함

출고·수입 실적의 구분

- 국내제조업체 | 국내소비용(무상제공 포함) 출고 제품·포장재별 중량기재(예규* 제9조 제2항)
- 수입업체 | 판매여부 관계없이 통관기준 제품·포장재별 중량기재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다수 사업장 및 OEM

- 다수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의무생산자로부터 출고량 일괄 제출 시 사업장 별로 출고량을 구분 기재 (예규 제9조 제1항) (※동일법인인데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제출은 법인번호 기준이며, 본사에서 지점별(사업장별)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 가능
- OEM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자 제출 시 주문자 납품물량과 직접 출고 물량을 구분 기재 (예규 제9조 제3항) (※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중 자사/타사로 구분)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

- 매출액·출고량, 수입액·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영 별표4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초과하면 출고·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예규 §9⑤)

예시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A육가공 업체

-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나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출고량	4.9톤
	수입량	0.9톤

➔

의무량 : 4.9 + 0.9 = 5.8 톤
(의무 대상)



① 우리회사 제품 및 상품 현황 자료 취합

- 전체 상품 및 제품 확인 후, 리스트 만들기(ERP자료 활용), 엑셀파일로 작업

② 상품별 제품·포장재 확인 (종류 및 중량 확인)

- ①에서 작성된 리스트에 제품·포장재 종류 및 중량 넣기

③ 2024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 확인

- 매출액 : '24년 결산 완료 후 손익계산서로 확인
※ 결산기준기간이 1. 1. ~ 12. 31.이 아닌 경우 : 부가세표준증명서
- cf.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 조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로 확인
- 수입액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수입항도착가격 (C.I.F.) 합계

④ 출고수입실적서 및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작성

- 자원순환통합징수(portal.budamgum.or.kr) 시스템 작성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 서식 등

IV. '24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방법

방법1: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 자원순환통합징수 홈페이지(portal.budamgum.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의무이행관리-출고수입실적” 클릭
- 출고년도(이행년도) 2024년으로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제조] 손익계산서, 출고량 확인용 결산 자료(제품 수불부 등)
 [수입] 수입실적증명서 및 포장재 산출 기타 자료 - 해당 무게 증빙을 위한 사진 등
- 저장 후 제출 버튼 클릭

방법1: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 '20년도부터 PP마대 품목 코드 0490으로 변경
- 중량산출기초자료 작성시 필름류 제품 구분 작성
 - '20년도부터 재활용의무가 부여되는 필름류 제품은 0460 실적 접수 시 '필름 구분' 항목 선택하여 제출

담당자명	홍길동	담당자연락처	
처리상태	작성	제출일자	2021-02-02
반려사유		비고	

※ [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를 입력하여 저장 후 [단계2]출고수입실적서를 확인하십시오.

[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
[단계2]출고수입실적서
샘플엑셀파일다운
엑셀업로드
품목주

□	출고년도	* 품목코드	대분류명	중분류명	* 필름구분
□	2020	0460 <input type="text" value="0460"/>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포장재 (제품)에어캡 (제품)세탁업필름 (제품)봉지·봉투 (제품)비닐장갑 (제품)식품용랩 </div>

유의!

방법1: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페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제품 · 포장재 제조에 사용한 경우

- ① '재활용원료사용량' 입력
- ②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페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생산자로부터 재활용원료를 구매하여 사용한 실적 증명 서류 첨부

[단계1]증량산출기초자료		[단계2]출고수입실적서		샘플엑셀파일다운		엑셀업로드		품목추가		행 복사		행 삭제		전년출고수입실적	
* 출고수입구분	* 연간출고수입량(개)	* 개당무게	출고수입량		① 재활용원료사용량		연간재사용량(개)		신청감경						
제조 ▼	10,000	20 g	200	kg		kg									
수입 ▼	10,000	20 g	200	kg		kg									

- (구매처 증빙)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재활용 신고증명서 등
- (구매 및 사용 증빙)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구매관련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원료배합비 등

전체건수 : 2

1

※ 결산보고서등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증빙자료, 매출액 증빙서류(매출액10억원 미만, 수입액 3억원 미만업체)등 첨부

일괄다운로드		파일첨부		파일삭제	
파일명	파일사이즈	등록일			
<input type="checkbox"/>					

EPR시스템 품목 코드

구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포장재	일반팩	[0120]	kg
	멸균팩	[0130]	kg
	유리병(뚜껑테일체형)	[0210]	kg
	유리병(뚜껑테분리형)	[0220]	kg
	철캔(뚜껑 일체형)	[0310]	kg
	철캔(뚜껑 분리형)	[0320]	kg
	알루미늄캔(뚜껑 일체형)	[0330]	kg
	알루미늄캔(뚜껑 분리형)	[0340]	kg
	PET병-무색단일재질	[0410]	kg
	PET병-유색단일재질	[0411]	kg
	PET병-복합 재질	[0412]	kg
	발포합성수지(PSP제외)	[0420]	kg
	단일재폴리스티렌페이퍼(PSP)	[0430]	kg
	단일복합재질 PVC	[0440]	kg
	기타 단일 재질 용기류·트레이	[0450]	kg
	기타 복합 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60]	kg
	전기기기류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0470]	kg
	윤활유 부동액 브레이크액의 용기류	[0480]	kg
	PP마대, 비료사료포장재 (기타 복합 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90]	kg

[]안의 숫자는 EPR시스템에 입력 시 적용하는 품목 코드입니다.

※ 필름류 제품 5종의 품목 코드는 [0460] 입니다.

※ PP 마대의 품목 코드는 [0490] 입니다.

※ 종이팩 품목코드가 일반팩 [0120], 멸균팩 [01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V. '24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방법

EPR시스템 품목 코드

구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구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제품	윤활유	[0710]	ℓ (리터)	제품	산업용 필름	[0813]	kg
	타이어	[0610]	kg		교체용 정수기 필터	[0814]	kg
	형광등	[0910]	개		안전망	[0815]	kg
	수은 전지	[0510]	g		어망	[0816]	kg
	산화은전지	[0520]	g		로프	[0817]	kg
	니켈카드뮴전지	[0530]	g		폴리에틸렌 관	[0818]	kg
	리튬전지	[0540]	g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0819]	kg
	망간전지·알칼리 망간 전지	[0550]	g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0820]	kg
	니켈수소전지	[0560]	g		파렛트	[0821]	kg
	수산물 양식용 부자	[1010]	kg		플라스틱 운반상자	[0822]	kg
	곤포사일리지용필름	[1110]	kg		창틀·문틀	[0823]	kg
	김발장	[1210]	kg		바닥재	[0824]	kg
	발광다이오드(LED)조명_전구형	[0920]	kg		건축용 단열재	[0825]	kg
	발광다이오드(LED)조명_직관형	[0930]	kg		전력·통신선	[0826]	kg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827]	kg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3. 1. 10.>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 EPR(www.epr.or.kr)에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원재출 내용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② 평균 총 매출액 (백만원)	③ 평균 총 수입액 (백만원)	④ 플라스틱 재활용률 사용량(kg)
		수량	단위 (kg, t, 개)	수량	단위 (kg, t, 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재출인 (서명 또는 인)

제품/포장재명 ←

→ 의무대상 품목분 아니라 모든 매출액 (법인 총 매출액)

→ 단위만 기재

→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에 작성한 제품/포장재 총중량(타사브랜드 출고량은 포함하지 않음)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공인보조기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명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1부 2. 제품·포장재의 중량·단량 산출 기초자료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이하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이라 함)이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함] 1부 가.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대상제품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로 붙음
첨단 업무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과 이 간의 컴퓨터처리 관련하여 해당 업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중개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출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출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1차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6의 종류 및 재출인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1종이외, 제외)
2. 1차년도 제조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을 작성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3. 1차년도 수입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수입액을 작성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4. 1차년도 전년도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사용량을 적용하여 재활용률 산출기초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1톤=1,000kg, 1kg=1,000g

공단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제품 · 포장재의 중량 · 용량 산출기초자료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명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구 분	상 품 명(규격)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	비 고
자사 브랜드	케이에코 김치	48.68	1,230,000	59,876	
	계				
타사 브랜드	알피김치	20	1400000	28000	알피, 서울시 송파구 123, 김아무, 02-123-567
	계				
자사 브랜드	계				
타사 브랜드	계				
자사 브랜드	계				
타사 브랜드	계				

→ 제품/포장재명

→ 제품/포장재 총중량 = 개당중량 X 연간 출고수량 (소수점절사)

→ '24년 연간 출고수량

→ 타사업체정보

←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

← 개당 실측 중량 (소수점 둘째자리)

← OEM공급내역 (타사상표부착판매)

환경부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제출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품군 의무생산자 해당사항 없음

작성요령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 EPR시스템 접속하여 제출 시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와 동시 제출 가능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상 품 명 (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kg)	③ 평가 등급	비 고
↓	↓	↓	↓	↓	↓	↓	
01~09 포장재 종류	평가받은 체크항목 작성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 (모달명)	개당 실적 중량(g)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출	'20년 연간 출고수량(개)	개당 중량(g) × 연간출고수량(개) = 연간출고량(kg)	평가결과서 등급으로 작성	
탄일재질 용기류	(중세) PE재질 (리필) 중세에 직접 인쇄 (마개 및 잠자재) 중세와 동일한 재질	케이에프 고추장 1kg	802.02	1,200	722.424	재활용 우수	
탄일재질 용기류	(중세) PE재질 (리필) 중세에 직접 인쇄 (마개 및 잠자재) 중세와 동일한 재질	케이에프 고추장 2kg	821.06	2,809	2,142.12946	재활용 우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환경부 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대상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재활용의무량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의무 생산자의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서 대행 제출 가능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품·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② 상품명(규격)	③ 재활용 원료 사용량(kg)	비고
자료				
제출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량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종이팩, 타이어)
2. ②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환경부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작성요령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 생산자” 로부터 재활용원료를 구매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 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 및 재활용원료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관련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원료배합비 등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EPR(www.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원료 사용량 세부내역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② 상품명(규격)	재활용원료 사용량		
		계 (A×B)	개당 사용량(A)	연간 출고량(B)
	계			
	제품A			
	제품B			
	제품C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명기

② 상품명(규격):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

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

재활용원료 제조업체			구입일자 (연월일)	구입량 (kg)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부과대상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실적 확인결과, 재활용의무량을 미이행한 양
- 의무생산자 : 2024년도 중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산출방법 : 영 제28조 ①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기준비용 x 재활용의무미이행량 x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의무미이행가산금액 (영 별표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에 따라 가산비율 차등)
* EPR시스템 재활용부과금 자동 계산기 활용

부과 · 납부

-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영 제28조③, 규칙 제18조 별지 제2호 서식)
※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2회 분할납부 가능(규칙 제18조의2)
※ 분할납부 신청기한 : 4월30일
-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 (영 제28조④)
- 납부된 재활용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국가 재활용시설설치 등 재활용 촉진 용도로 사용(법 제19조⑤ 및 제20조)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2회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신청 시 납부기한	
1회분	8. 31.
2회분	11. 30.

출고수입실적 제출 시 함께 제출해주세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 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2.11.1>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 신청사항	품목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회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 1회	8월 31일		
	제 2회	11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 자료실(portal.budamgum.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V. 출고·수입 실적 조사 안내

조사 대상

- 운영부서장이 표본선정 (전년도 출고수입량 합산량 4톤 이상인 관할지역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20%수준)
 - 전전년도 재활용실적보고(전년도 연도 말 기준) 상의 의무 생산자 기준

표본선정기준

순위	선정기준
1순위	제도 미이행업체 ● 제조업체 : 각종 기업정보 및 OEM정보를 활용 ● 수입업체 : 수입통관자료 활용
2순위	최근 5년간 출고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
3순위	관할 지역별 출고실적 상위 20% 이상 업체
4순위	출고실적 및 품목별 중량 오류 등 실적 확인 필요 업체
5순위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업체
6순위	OEM 대상 업체
7순위	규모 미만 여부 확인 필요 업체

출고 조사 세부기준

1. 누락 품목 조사 (기 제출 자료와 비교)

- 검토 서류 : 결산서(부속명세서) 및 제품수불부, 수입제품관리대장 등
- 기타 자료 : 생산제품 카탈로그, 제품 사진첩 등

2. 결산서 및 제품수불부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대상 확인

- 세트제품 포장재, 단일제품을 다회 포장할 경우 등

3. 기 제출한 출고량 확인

- 포장재 단위 중량 체크 : 부분품 중량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
 - 계량 방법 : 1kg정도 모아, 포장재의 개수로 나눔. 개당 0.01g까지 산출(소수점 3째자리부터는 절사)
 - 오차범위 $\pm 2\%$ 이내(오차 발생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시 작은 부분을 선택 적용)
 - 반품 확인 : 반품 후 폐기된 물량 및 증정용 샘플의 출고수량 포함여부 확인 ▶ 반품 후 폐기된 물량 포함 시만 제외
 - ※ 반품되어 폐기된 물량 제외 시 : 폐기 증명서류(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 확인 후 제외
 - ※ 반품되었다가 재출고 된 물량의 출고수량 포함여부 확인 : 포함 시 제외

출고 조사 세부기준

4. OEM제품 수급·공급내역 확인

-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 : 수급 ·공급업체 간 상호 확인

5. 수출입 증명서류의 확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 (한국환경공단 제출용) 등으로 확인

6. 재활용의무량 감경 적정여부 확인(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의 제품·포장재 출고실적과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비교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 적정여부 확인
-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재활용원료 공급자의 적정성 (폐기물관리법 인·허가 여부) 등 증빙서류 검토

제조업

판매 (매출)	신고대상 여부
자가소비 - 사내 소비(직원들 선물 배포, 방문객 선물 등등) - 사외 소비(기부, 매출을 위한 홍보 샘플로 이용 등)	대상
다른 지점, 물류창고로 이동	비대상
대체(회계 정리 상 실물의 출고가 아닌 경우)	비대상
기타(제조사별 다양한 이유 등)	사유에 따라 신고대상, 제외 결정
반품	폐기증명서류 있는 경우 제외

유통판매업

판매 (매출)	신고대상 여부
유통 차익을 남기고 상품 그대로 재판매	비대상
타사 상품을 매입하여 '자사브랜드' 를 붙여 소분·재포장 후 일정 이윤을 붙여 재판매 * 손익계산서 상 상품 매출액, 상품매출원가 에서 확인	대상

수입업 | 수입실적증빙자료 최적화 예시

進	P.O.No.	상 호	품 명	수량	H.S.NO.	EPR 대상여부	포장재 종류	수량단위내 입수량	포장재 개수	포장단위중량(g)	포장재 무게(kg)	비고
6	DB140103	DFS EZ	Filtrase Premium L	3,360	3507.90-9000	대상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20	168.00	1085	182.28	
7	LM140103	Institute Rosel	Ec.faecium R0026-200 Powder	100	3002.90-4000	대상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1	100.00	12.87	1.287	
8	RE140106	AB Enzyme	Biotouch OSB 7	880	3507.90-9000	대상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220	4.00	1085	4.34	
9	GC140106	Genencor GP	Multifect Pectinase FE	1,950	3507.90-9000	대상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25	78.00	1085	84.63	
10	DB140107	DFS EZ	Brewers Clarex	100	3507.90-9000	대상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20	5.00	1085	5.425	
20	DB140121	DFS EZ	Delvolase	480	3507.90-6020	비대상			#DIV/0!		#DIV/0!	
20	DB140121	DFS EZ	Maxazyme NNP DS	960	3507.90-6020	비대상			#DIV/0!		#DIV/0!	
20	DB140121	DFS EZ	Rapidase C80 Max L	200	3507.90-9000	대상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20	10.00	1085	10.85	
24	LM140128	Institute Rosel	Lb.plantarum R1012-150 Powd	500	3002.90-4000	대상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1	500.00	12.87	6.435	
24	LM140128	Institute Rosel	Probiocap Lb.R11ME, 40	20	3002.90-4000	대상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1	20.00	12.87	0.2574	
24	LM140128	Institute Rosel	Sc.thermophilus R0083-100	40	3002.90-4000	대상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1	40.00	12.87	0.5148	
24	LM140128	Institute Rosel	Ec.faecium R0026-200 Powder	100	3002.90-4000	대상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1	100.00	12.87	1.287	
31	GC140205	Genencor GP	GC007	125	3507.90-9000	대상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 트레이	30	4.17	1085	4.52	

THANK YOU
감사합니다.